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62

제출년월일 : 2025. 5.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적극행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극행정 전담 의사결정 기구인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업무 추진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조직 내 적극행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조항 개정(안 제3조)

나. 위원회 구성 조항 신설(안 제4조)

다. 위원회 운영 조항 신설(안 제5조)

라. 위원장의 직무 조항 신설(안 제6조)

마. 위원의 신분보장 조항 신설(안 제7조)

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8조)

사. 위원의 해촉 조항 신설(안 제9조)

아. 수당 등 조항 신설(안 제10조)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5. 4. 17.~5. 17. (제출된 의견 없음)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원안동의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4)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5) 제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원안의결(2025. 5.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한다.

제3조 제1항과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본문으로 하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되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인사업무 소관 국장과 감사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사, 법무지원 등 적극행정 업무 관계 부서의 장 또는 공무원

2. 구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 (위원의 신분보장)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 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삭 제>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되,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심의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 절차에 따른다.	③ <삭 제>
<신 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되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인사업무 소관 국장과 감사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사, 법무지원 등 적극행정 업무 관계 부서의 장 또는 공무원 2. 구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 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신 설>	제7조 (위원의 신분보장)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

	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 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4조·제5조 (생 략)	제11조·제12조 (현행 제4조 및 제5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경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감사담당관 이혜정
연 락 처	02-3153-8173